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조례로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요금 지원〉

■ **엄태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8745호)**

2025.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오 세 일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 의견	2
1. 조례로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요금 지원	2

I. 개요

1. 엽태영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8722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엽태영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3. 10.

(3) 회 부 일 : 2025. 3. 1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생과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산후조리원의 이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용 요금은 계속 인상되고 있음.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200만원 미만의 소득 가구에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비용 부담(53.3%)으로 나타남.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임신부에 대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출산 예정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5조의17제2항 및 제21조제1항제10호 신설 등).

Ⅱ. 검토 의견

1. 조례로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요금 지원

□ 개정안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17제2항 및 제21조제1항제10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u>설치</u>) ① (생략)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u>설치 및 이용지원</u>) ① (현행과 같음)
<u><신설></u>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임산부가 신청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21조(경비의 보조)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21조(경비의 보조) ① ----- ----- -----.
1. ~ 9. (생략)	1. ~ 9. (현행과 같음)
<u><신설></u>	<u>10. 제15조의17제1항에 따른 지방</u>

② (생 략)	<u>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u> <u>치·운영 경비</u> ② (현행과 같음)
---------	--

- 산후조리원은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신생아에게 급식·요양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곳으로서,¹⁾ 1990년대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하였으며, 운영·관리 등을 보다 철저히 하고자 2006년 「모자보건법」에 그 근거가 규정되었음.
- 산후조리원은 주로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었으나 질병에 취약한 신생아의 집단감염 및 화재 등의 사고로 안전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산후조리원의 위생관리 등을 철저히 하고 산모와 신생아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²⁾에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근거가 규정되었고, 2021년 12월 개정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주체로 기초자치단체 외에 광역자치단체가 추가되었음.

1) 「모자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산후조리업(産後調理業)"이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이하 "산후조리원"이라 한다)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2)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한 산후조리원(이하 이 조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시 감염 및 안전관리 대책 마련, 모자동실 설치·운영, 이용자 부담 및 저소득 취약계층 우선이용 여부 등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24년말 기준 공공산후조리원은 전국에 21개소³⁾가 설치되어 운영
중으로, 전체 산후조리원 460개소 중 4.6%에 해당함.

< 전국 산후조리원 현황 >

(단위: 개소수, %, 만원, 명)

개소수			입실율		평균 이용요금 (2주, 일반실)		1일 평균 입원 영유아수	
총계	공공	민간	공공	민간	공공	민간	공공	민간
460	21	439	61.5	55.9	175	364	8.0	12.3

자료: 보건복지부('24.12. 기준, 휴업한 산후조리원 제외)

□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하여 이용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경비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 과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의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할 수 있는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8조⁴⁾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요금 감면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관련한 조례의 제정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에 위임근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3) p. 7. 전국 공공산후조리원 현황 참조

4)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
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이미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률의 위임 근거 없이 조례로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요금 감면을 시행하고 있음⁵⁾.

- 한편, 보건복지부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경비를 국가가 보조하는 방안에 대하여 산후조리 지원에 있어 중앙정부는 지역 구분 없는 보편적 정책 지원 제공을 하고, 지방정부는 공공산후조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시행하는 등의 역할 구분이 필요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개정안에 대한 관계 부처 및 관련 기관 의견 >

부처명	개정안에 대한 의견
기획재정부	○민간 산후조리원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국가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은 민간 영역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며, 정부는 “첫만남이용권 제도”를 통해 산후조리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중복 소지가 있음. * 첫째 200만원, 둘째 300만원 지원
대한의사협회	○전체 산후조리원 중에서 소수의 비중을 차지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특정 임산부에게만 추가적인 비용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보편복지의 원칙에 어긋나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됨.

5) 예컨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임산부 지원 조례」의 사례를 들 수 있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임산부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공공산후조리원”이란 분만 후의 산모에게 산후조리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10조(이용대상 및 이용료 등)

④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기간은 14일로 하고, 기본이용료는 250만원으로 한다.

⑤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서대문구 주민이 아닌 사람은 기본이용료를 납부한다.

2. 서대문구 주민은 기본이용료의 100분의 20을 감면한다.

3.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본이용료의 100분의 90을 감면한다.

4.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는 신생아당 이용료의 100분의 30을 할증한다. 이 경우 이용료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적용한 이용료를 기준으로 할증하고 천원 단위는 절사한다.

5. 삭제<2023. 4. 5.>

문 의 처
02)6788-5498

【참고자료】	전국 공공산후조리원 현황
---------------	----------------------

(단위: 명, m²)

지역	산후조리원명	개소일	임산부실	영유아실	면적
서울 송파구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산후조리원	2014.2.	27	31	1,298
서울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품애(愛)가득	2023.12.	12	12	1,187
울산 북구	울산 북구 공공산후조리원	2021.7.	28	28	2,883
경기 여주시	경기 여주 공공산후조리원	2019.5.	13	13	1,498
경기 포천시	경기 포천 공공산후조리원	2023.5.	20	20	2,437
강원 삼척시	삼척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	2016.2.	13	15	765
강원 철원군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2020.2.	10	10	1,341
강원 양구군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2020.6.	8	8	825
강원 화천군	화천군 공공산후조리원	2022.2.	5	5	603
강원 양양군	양양군 공공산후조리원	2024.5	7	7	1,638
충남 홍성군	충남홍성 공공산후조리원	2022.2.	8	9	580
전남 해남군	전남1호 공공산후조리원	2015.9.	10	10	494
전남 강진군	전남2호 공공산후조리원	2018.5.	10	10	616
전남 완도군	전남3호 공공산후조리원	2019.6.	10	10	730
전남 나주시	전남4호 공공산후조리원	2020.12.	16	18	797
전남 순천시	전남5호 공공산후조리원	2022.3.	5	5	113
경북 울진군	울진군 공공산후조리원	2020.9.	8	10	707
경북 김천시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	2022.10.	12	14	1,432
경북 상주시	상주시 공공산후조리원	2023.12.	13	10	1,998
경남 밀양시	밀양 공공산후조리원	2022.6.	8	8	524
제주 서귀포시	서귀포 공공산후조리원	2013.3.	11	15	548

자료: 보건복지부